현을 위한 법률」(2001.7.1 시행예정)(2001년초 임시국회 통과전망)이 그 제도적 장치의 일환이다.

동법률 제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(중 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 단체)은 전자정부(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)의 구현을 촉진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

- 1. 당해 기관의 행정혁신과 전자정부 의 구현을 위한 사업간의 연계
- 2. 전자화 대상업무의 처리과정 혁신
- 3.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수행 및 행 정서비스의 제공
- 4.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의 제고 및 검정
- 5. 전자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국민 불 만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신속한 개선

그리고 법제6조~14조에는 전자정부 구현과 운영의 원칙 9가지를 <표 2>와

같이 정하고 있다.

행정관리의 전자화와 관련하여. 제16 조에는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(컴 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 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 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)를 기본으로 하 여 작성, 발송, 접수, 보관, 보존 및 활용 되어야 하고(업무의 성격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) 전자공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되며(17조①)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 는 전자서명(전자서명법 2조2호) 또는 전자적수단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송 신하여야 한다(18조①)고 규정하고 있다. 이러한 행정관리의 전산화를 위해서 는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그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

1.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

하고 있다(21조①).

- 2. 통계정보·문헌정보 등 행정업무 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
- 3.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 정보